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2025. 7.

순서

I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1
II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2
①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②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5
③ 폭염작업으로 인한 장해 예방조치	9
④ 휴게시설의 설치	12
⑤ 소금과 음료수 비치	13
III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14
IV .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권고)	15
①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및 사전점검	16
②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17
③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18
④ 열순응 조치	19
V . 참고 자료	20
①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20
② 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22
③ 우수사례	24
④ 지방관서 연락처	28

<사업장 대응지침 제공 배경>

-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 폭염 확산
 -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
- '24.10.22. 여야 합의로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하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25.7.17. 공포 및 시행)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
폭염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필요

I.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39조제1항제7호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 사업주는 폭염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의 구체적 사항을 정한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개정 규칙 시행일: '25.7.17.)

☑ 폭염 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1호)

☑ 폭염 관련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신설]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1) 폭염 · 폭염작업의 정의

-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로서, 온열질환 발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기상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은 “폭염”을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으로 정의(제558조제4호)
-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함(제559조제4항)

- (작업장소) 근로자가 일하는 ‘주된 작업장소’로서,
 - * 그 외 제559조제4항 관련 별표 13의2,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제2항에 따른 작업장소도 마찬가지로 ‘주된 작업장소’로 보아야 함
 - 사업장 내에서 원재료·중간제품·완성품 및 부산물의 생산·가공·저장·보관·유지·보수 등을 위해 수행되는 공정*을 단위로 함
 - * (예시) 원료처리공정, 반응공정, 분리공정, 제품저장·출하공정 등
- (장시간 작업)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연속해서 2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로 해석
 - ※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 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도록 규정(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3항 본문)

(2) 체감온도의 측정

- 체감온도는 기온과 습도 또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사람이 느끼는 온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수치임
 - * 기상청은 일 최고 체감온도를 기반으로 폭염 특보의 발표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23.5.15.~)
- 안전보건규칙은 “체감온도”를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한 온도’로 정의(제559조제4항)

☑ 기상청 폭염 특보 발표기준

구분	주의보	경보
폭염으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①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②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측정함([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

- QR 코드 또는 앱(위기탈출 안전보건)에서 온도·습도를 입력하면 기상청의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체감온도가 자동으로 계산됨



- 기상청의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도 체감온도 계산 시스템을 제공(25.6.1~)

□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는 측정값이 가장 높은 장소의 체감온도로 할 수 있음

□ 다만,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음([별표 13의2] 체감온도의 측정)

-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는 옥외 이동작업 등 근로자가 작업하는 주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어느 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말함

☑ 체감온도 산출표(예시)

기상청 체감온도 표		관심 주의 (주의보) 경고 (경보) 위험											
기온(℃) 습도(%)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0	26.6	27.6	28.5	29.5	30.4	31.4	32.4	33.3	34.3	35.3	36.2	37.2	38.2
45	27.1	28.1	29.0	30.0	31.0	32.0	32.9	33.9	34.9	35.9	36.9	37.8	38.8
50	27.6	28.6	29.5	30.5	31.5	32.5	33.5	34.5	35.4	36.4	37.4	38.4	39.4
55	28.0	29.0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60	28.4	29.4	30.4	31.4	32.4	33.5	34.5	35.5	36.5	37.5	38.5	39.5	40.5
65	28.9	29.9	30.9	31.9	32.9	33.9	34.9	35.9	36.9	38.0	39.0	40.0	41.0
70	29.3	30.3	31.3	32.3	33.3	34.3	35.4	36.4	37.4	38.4	39.5	40.5	41.5
75	29.7	30.7	31.7	32.7	33.7	34.8	35.8	36.8	37.8	38.9	39.9	40.9	42.0
80	30.0	31.1	32.1	33.1	34.1	35.2	36.2	37.2	38.3	39.3	40.4	41.4	42.4
85	30.4	31.4	32.5	33.5	34.5	35.6	36.6	37.7	38.7	39.7	40.8	41.8	42.9
90	30.8	31.8	32.9	33.9	34.9	36.0	37.0	38.1	39.1	40.2	41.2	42.3	43.3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적용 범위

☐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는 실내·외 폭염작업 모두에 적용됨

(2) 31℃ 이상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조치해야 함
(제560조제2항 본문)

- ❶ 냉방·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 ❷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❸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 사업주는 사업장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조치를 선택함

- ❶“온도·습도 조절장치”에는 냉방·통풍장치, 그늘막 등이 포함됨
- (냉방장치) 작업장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춰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설비
 - * (예시)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이동식 에어컨 등
 - (통풍장치) 작업장의 온·습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거나 개별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낮춰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 설비
 - * (예시) 제트팬, 실링팬, 산업용 대형선풍기 등
 - (그늘막) 옥외 작업장소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이 있는 시설

☑ 실내·외 작업장소에 ‘통풍·냉방장치 또는 그늘막 설치’는 유해·위험한 장소에 설치되지 않도록 위험성평가 등을 거쳐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 ❷“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란 근로자가 폭염작업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작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작업시간대의 조정) 폭염 집중 시간대 폭염작업을 줄이기 위한 조기 출근(건설현장 예시: 9시~18시→5시~14시) 등
 - (기타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폭염 집중 시간대의 작업 시간 단축, 작업 일정 또는 속도의 조정 또는 교대근무를 통한 휴식부여 등과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주의 ‘❶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의 설치·가동’ 또는 ‘❷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가 계속하여 31℃ 이상인 경우에는 ❸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제560조제2항 단서)

☑ 폭염작업 중 휴식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그늘진 장소)과 시원한 물 등을 제공해야 함

[3] 33℃ 이상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3℃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함
(제560조제3항 본문)
-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부여) 최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
-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조치를 하여야 함(제560조제3항 단서)
-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음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 ② 갑작스런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 ⑤ 그 밖에 ①~④에 준하는 작업으로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등

-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는 근로자에게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하고 가동하게 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실제로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이어야 함
 -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근로자가 개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 (개인용 보냉장구) 냉매의 교체·충전 또는 팬선풍기 작동 등을 통한 냉각 효과로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냉각 의류 등
- '작업의 성질상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사업주는
 - 지급된 개인용 냉방·통풍장치 또는 보냉장구가 근로자의 체온상승을 줄여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또한, 근로자에게 얼음물 등 시원한 물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통풍·냉방장치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주로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함

제562조(고열·폭염장애 예방 조치)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애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온·습도계의 비치

- ☐ 사업주는 근로자의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체감온도 확인을 위해 주된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상시 갖추어 두어야 함(제562조제2항제1호)
-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는 근로자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
 -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폭염 영향예보(관심, 주의, 경고, 위험) 및 특보(주의보, 경보) 발표를 활용할 수 있음
 - * 폭염 영향예보는 D-1일, 폭염 특보는 D-day 발표
- ☐ 온·습도계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기기도 가능하나,
 -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 부속기관)에서 인정한 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거친 온·습도계 사용을 권장

☒ **폭염영향 예보 및 특보**

영향예보			특보
단계	발령기준	위험수준	
관심	해당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1℃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전날 발령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 취약 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해당 없음
주의	해당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전날 발령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폭염주의보 (당일 발령)
경고	해당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전날 발령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폭염경보 (당일 발령)
위험	해당 지역의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 이상 1일 이상 지속 예상되는 경우 전날 발령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2)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온열질환의 증상 및 예방 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려야 함
(제562조제2항제2호)
 - (온열질환의 증상) 온열질환은 열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음
 - (예방조치)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 자주 마시기,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기 등이 있음
- ☐ 근로자에게 알리는 방법은 안전보건교육 또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의 활용이 가능하며,
 - ※ ‘폭염에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됨(산안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관련 별표5, '25.6.1. 시행)
 -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작업장소, 휴게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온라인 등을 통한 안내를 병행

[3] 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 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연도 12.31.까지 보관해야 함(제562조제2항제3호)
 - 만약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하여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온도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체감온도를 기록하면 됨
 - ‘조치사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규칙 제560조제2항 및 제3항, 제562조, 제567조, 제571조에 따라 실제 이행한 보건조치를 기록함

[4]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이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9 등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562조제3항)
 - 폭염작업 근로자에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로 봄
- *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에 따른 온열질환별 주요 증상(’25.5월)
- 폭염작업 근로자에게 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주 또는 동료 근로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25년 질병관리청에 따른 온열질환 응급조치
-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응급조치 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119에 신고
 -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
 - 119 도착 전까지는 응급조치를 수행

□ 사업주는 온열질환자 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한 폭염작업에 대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미흡한 경우 개선하여야 함

☑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 알기(질병관리청, '25년)

〈온열질환 주요증상〉

- 고열
- 축축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 빠른 맥박과 호흡
- 두통
- 피로감과 근육경련

※ 증상이 나타나면 온열질환 응급조치 실시,
증상 개선이 없으면 119 신고



4 휴게시설의 설치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제567조제2항)

○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함

- ‘그늘진 장소’는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함
 - 냉방 차량, 그늘막 등을 설치·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음
 - * 이동식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을 설치하고, 시원한 물이나 얼음물 등을 비치
 - 산안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이 근로자의 옥외 작업장소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

5 소금과 음료수 비치 (개정)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함(제571조)
 - 작업장소의 체감온도 또는 근로자의 작업시간에 상관없이 근로자가 폭염 등으로 인해 더위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면, 근로자가 언제든지 섭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소금과 얼음물 등 시원한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함

☑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한도 및 품목 확대(*25.2.12. 시행)

- 건설현장(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극 활용
 - 임시 휴게시설의 설치·해체·임대 및 냉방기기의 임대 비용은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 노·사가 위험성평가 등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품목(생수 등 음료, 간이 휴게시설에 비치하는 의자 등 소모성 물품)의 사용 한도를 10%에서 15%로 확대

Ⅲ.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작업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IV.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권고)

-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1도(7.8.),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 폭염 확산
 - * 기상 관측 이래 처음 7월 중 기온이 경기 광명(40.2도), 파주(40.1도)에서 40도 넘음
- 올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전년 동기 대비 급증 (질병관리청 기준)
- 앞으로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으로
 - * 우리는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NASA 기후학자 피터 칼무스)
 -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폭염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폭염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
 - * ('25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 사업장에서도 본 지침의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 프로세스 및 우수사례 등을 활용하여
 - 현장 여건에 맞게 사업장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
 - * 5대 수칙: ❶시원한 물, ❷냉방장치, ❸휴식(2시간마다 20분), ❹보냉장구 지급, ❺119신고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대책 수립 프로세스 예시〉

구분	활용자료
step1.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및 사전점검	• 사업주 사전 점검표 활용
step2.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 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 활용
step3.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 민감군 대상 및 관리방법 활용
step4. 열순응 조치	• 열순응 프로그램 예시 활용

step1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및 사전점검

- ☐ 사업주는 온열질환 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
- ☐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사전점검(점검표 활용)
 -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

사업주 사전 점검표	
〈1〉 물	
○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생수 등) 등을 충분히 갖추어 두었는지(규칙 제571조)	☐ 적정 ☐ 개선 필요
〈2〉 냉방장치	
○ 체감온도 31도 이상의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규칙 제560조제2항) -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습도 조절장치를 설치·가동 -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 적정 ☐ 개선 필요
〈3〉 휴식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의 주기적 부여 (규칙 제560조제2항)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제560조제3항) ○ 폭염 노출 옥외 장소에서 작업 시 그늘진 장소 제공(규칙 제567조) ○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관리 기준 준수 (산안법 제128조의2)	☐ 적정 ☐ 개선 필요
〈4〉 보냉장구	
○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규칙 제560조제3항 단서) →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지급·가동 또는 개인용 보냉장구 지급·가동	☐ 적정 ☐ 개선 필요
〈5〉 119신고	
○ 폭염작업 근로자의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제562조제3항)	☐ 적정 ☐ 개선 필요

step2**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 사업주는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를 폭염작업 근로자에게 배포

* 현재 느껴지는 증상을 체크하여 온열질환 예방에 활용(행정안전부)

☐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를 체크

- 2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 등에게 알리고
- 사업주 또는 동료근로자 등은
온열질환 증상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119에 신고 후 응급조치

【근로자용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행정안전부)】

현재 느껴지는 증상을 체크해주세요.		예	아니오
증상	1. 평소보다 높은 체온	☐	☐
	2. 두통	☐	☐
	3. 어지러움	☐	☐
	4. 메스꺼움	☐	☐
	5. 근육 경련	☐	☐
	6. 지나치게 많은 땀을 흘림	☐	☐
	7. 구역질	☐	☐
	8. 갑작스런 피로감	☐	☐
 2개 이상 “예”라고 답한 경우 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②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시고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히세요 ③ 물을 섭취하도록 하여 수분을 보충하세요 ④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step3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 온열질환은 만성질환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뇌심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은 폭염 관련 주의 필요(질병관리청)

□ 온열질환 민감군이 체감온도 31℃ 이상의 폭염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주의 관리 필요

【온열질환 민감군 대상 관리방법】

□ 온열질환 민감군 대상

① 만성질환(고혈압, 저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② 온열질환 기왕력

③ 고령자

④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거나 체액량 등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복용

* 의약품의 기능에 따라 땀 배출을 억제하거나(파킨슨병 치료제 등) 체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이뇨제 등)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안정제, 촉진제 등) 경우

⑤ 알코올 의존이 있는 사람

⑥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

* 건설현장의 형틀·철근·콘크리트타설·용접작업 등에서 전신을 움직이는 작업, 중량물을 수작업에 의해 반복적으로 들고 내리거나 취급하는 작업, 삽질·망치질·툽질 등 공구 사용작업 등

⑦ 신규배치자(열순응이 되지 않은 작업자)

⑧ 일시적 건강상태 저하(전날 과음, 탈수 등) 등

□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방법

① 폭염작업 전에 온열질환 민감군을 선정하고 온열질환 예방교육 실시

②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열순응 조치 등 걱정 배치

③ 작업 중 주기적으로 순회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온열질환 자각증상)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④ 31℃ 이상의 폭염작업 시 휴식시간 추가 배정, 폭염작업 시간 단축

step4

열순응 조치

- 최근 7년간('18~'24년) 온열질환 산재 사망자 31명 중 25명*(80.6%)이
작업투입 후 7일 이내에 발생

* 투입 첫날 13명(41.9%), 둘째날 9명(29.0%), 3~7일 3명(9.7%)

- 열순응* 여부가 온열질환 발생에 큰 영향을 줌

* 폭염작업에 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작업량과 노출을 점진적으로 늘림

- 처음으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은
작업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프로그램 도입 필요

【열순응 프로그램 예시】

- 열순응은 5일간 단계적으로 적용

- 신규직원(또는 온열질환 민감군)

⇒ 1일 정상작업의 20% → 2일 40% → 3일 60% → 4일 80% → 5일 100%

- 복귀직원(이전에 열순응 되었으나 연속 7일 이상 작업하지 않은 근로자)

⇒ 1일 정상작업의 50% → 2일 60% → 3일 70% → 4일 80% → 5일 100%

V. 참고자료

1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7조(벌칙) ①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폭염”이란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및 그 밖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④ “폭염작업”이란 폭염으로 인해 별표 13의2에 따라 측정된 온도(이하 “체감온도”라 한다)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말한다. 체감온도의 측정(제559조제4항 관련)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작업장소의 바닥 면으로부터 약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의 높이에서 체감온도를 측정해야 한다. 2. 옥외 이동작업 등의 사유로 제1호에 따른 체감온도의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법」 제11조에 따라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다.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등)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에서의 작업이 폭염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1. 냉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한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2. 작업시간대의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는 경우를 포함한다) (생략)을 위반한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상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폭염특보의 기준이 되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하여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62조(고열·폭염장해 예방 조치) ② 사업주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등 온도·습도를 측정하는 기기를 상시 갖추어 둘 것
2. 근로자에게 폭염작업에 따른 건강장해의 증상 및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폭염작업 전에 미리 알릴 것
3.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작업장소에서 측정한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폭염작업이 이루어진 일자별로 기록하고, 그 내용을 폭염작업이 있었던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할 것

③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하여 열사병 등 건강장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에 직접 신고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는 등 고열작업 또는 폭염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질병 종류 및 정의	주요증상	응급조치방법
열사병 (Heat Stroke)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 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 - 다발성장기손상 및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고 치사율이 높아 온열질환 중 가장 위험한 질환	- 중추신경 기능장애 (의식장애/혼수상태) -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 빠르고 강한 맥박 - 심한 두통, 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 합병증* * 혼수, 간질발작, 횡문근 용해증, 신부전, 급성호흡부전증후군, 심근손상, 간손상, 허혈성 장손상, 췌장손상, 범발성 혈간내 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등 - 메스꺼움, 어지럼증(현기증)	119에 즉시 신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 환자의 옷을 느슨하게 하고 환자의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절대 금지합니다.
열탈진 (Heat Exhaustion)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	- 땀을 많이 흘림(과도한 발한) - 차고 젖은 피부, 창백함 -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음($\leq 40^{\circ}\text{C}$)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근육 경련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어지럼증(현기증)	- 시원한 곳 또는 에어컨이 있는 장소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습니다. -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열경련 (Heat Cramp) - 땀을 많이 흘릴 경우, 체내 염분(나트륨) 또는 칼륨, 마그네슘 등이 부족하여 근육경련이 발생하는 질환 - 특히 더운 환경에서 강한 노동이나 운동으로 발생	근육경련(종아리, 허벅지, 어깨 등)	- 시원한 곳에서 휴식합니다. - 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해줍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에는 이온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과당함량이 높은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마사지 합니다. ※ 경련이 멈추었다고 해서 바로 다시 일을 시작하지 말고 근육 부위를 마사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1시간 넘게 경련이 지속 - 기저질환으로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 평상시 저염분 식이요법을 한 경우

질병 종류 및 정의	주요증상	응급조치방법
열실신 (Heat Syncope)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 • 주로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럼증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다리를 머리보다 높은 곳에 둡니다. • 의사소통이 가능할 경우, 물을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열부종 (Heat Edema) • 체온이 높아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체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 • 이런 상태에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게 되면 체표에 순환하던 혈액의 수분들이 혈관 밖으로 이동하면서 부종 발생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 시원한 장소로 옮겨 평평한 곳에 눕힙니다. • 부종이 발생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둡니다.
열발진/땀띠 (Heat Rash) •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서 땀이 원활히 표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작은 발진과 물집이 발생하는 질환	•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목, 가슴상부, 사타구니, 팔, 다리 안쪽)	•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합니다. • 발진용 분말가루 및 연고 등을 사용합니다.
일광화상 (SunBurn) • 햇빛(자외선)에 오래 노출되어 피부가 붉어지고 염증반응이 생기는 증상	• 아프고 붉고 따가운 피부 • 피부의 물집	• 일광 화상이 나올때까지 햇볕을 피하세요. • 햇볕에 탄 부위는 시원한 천을 대거나 찬물로 목욕하세요. • 일광화상 부위에 보습연고를 사용합니다. • 물집을 터트리지 마세요.

□ 온습도 조절장치, 작업시간대 조정, 휴식부여

① (온습도 조절장치 등) 국소냉방장치 및 통풍시설 설치

우수사례

- 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 집중 근무장소에 국소냉방장치 설치
- 건설 현장의 작업장소에 커튼식 그늘막 설치

온습도
조절장치

〈집중 근무장소에 냉방설비 설치〉



〈상하차 공간에 제트팬 설치〉

그늘막
설치

설치 전경



설치 상세사진

와이어+비너

〈아파트 공사현장 내 커튼식 그늘막 설치〉

② (작업시간대 조정)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이는 조치 시행

우수사례

- 조기출근: 건설현장 05:30 조기출근 제도 시행

③ (휴식 부여)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휴식부여 매우 곤란 시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 보냉장구 지급

우수사례

- 쉼터를 설치하기 어려운 현장은 차량을 활용하여 고드름카 운영하여 휴식 부여
- 쉼터로 이동하기 어려운 철근 작업장 주변에 차광막을 설치하여 휴식 부여

휴식 부여	 〈쉼터에서 시원한 바람 및 물 섭취〉	 〈쉼터 형식으로 고드름카 운영〉
쉼터운영 보냉장구 지급	 〈차광막 설치하여 쉼터로 운영〉	 〈아이스 조끼 및 응급키트 지급〉

□ 온열질환 예방 및 발생에 대한 조치

① (온도측정) 주된 작업장소에서 온·습도계를 비치,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폭염 상황 안내 및 모니터링

우수사례

- 체감온도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에 따라 폭염 상황을 방송 및 SNS 전파
- 휴식알리미 스티커를 안전모에 부착, 체감온도를 간접적으로 확인



② (응급조치)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조치

우수사례

-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도착 전까지 현장 응급조치 시행
- 시원한 곳으로 이동, 시원한 물 섭취, 근육경련 발생시 마사지

□ 휴게시설(그늘진 장소)

-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 설치, 옥외 작업장소에 그늘 설치, 태양광 패널 친환경 컨테이너 휴게시설 마련 등

우수사례

- (물류) 작업장소에서 1분 내 접근 가능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 냉방장치 설치, 의자, 냉온수기 등 구비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건설) 옥외 작업장소에 그늘 설치, 태양광 패널 친환경 컨테이너 휴게시설 설치 등

휴게시설, 쉼터 설치		
	〈작업장소의 가까운 곳에 쉼터 내 냉방장치 및 의자, 냉온수기 비치〉	
		
	〈태양광 패널 적용 쉼터 설치〉	
	〈주된 작업장소에 쉼터 설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실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실외)>

4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처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서울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02-2250-5789 02-2250-5799
서울강남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408(대치동, 디마크빌딩)	02-3465-7340
서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동관	02-2142-8871
서울서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태영데시아빌딩)	02-2077-6179
서울남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20	02-2639-2274
서울북부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49	02-950-9831
서울관악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2길 42	02-3282-9071
충부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032-460-6240 032-460-6278
인천북부	산재예방지도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59번길 6	032-540-7995
부천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181(골든벨타워)	032-714-8782
의정부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143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로 97	031-850-7637 031-850-7674
고양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031-931-2871
경기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34	031-259-0242 031-259-0266
성남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90번길 3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031-788-1578 031-740-6743
안양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44번길 73	031-463-7350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안산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0, B동	031-412-1927
평택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5길 72	031-646-1189
강원	산재예방지도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033-269-3584
강릉	산재예방지도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1991	033-650-2524
원주	산재예방지도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59	033-769-0826
태백	근로개선지도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32
영월	근로개선지도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단종로 8	033-371-6243
부산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36 별관	051-850-6491 051-850-6470
부산동부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12	051-559-6639
부산북부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804	051-309-1559
창원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532번길 28	055-239-6584
울산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392번길 22	052-228-1885 052-228-1876
양산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	055-370-0944
진주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황로 11번길 43	055-760-6563
통영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남도 통영시 광동면 죽림1로 69	055-650-1938
대구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2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2(호명빌딩)	053-667-6396 053-667-6375
대구서부	산재예방지도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053-605-9161

지방관서	담당과	소재지	연락처
포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22번길8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430	054-271-6835 054-271-6858
구미	산재예방지도과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1로 312-27	054-450-3556
영주	근로개선지도팀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88	054-639-1169
안동	근로개선지도팀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41
광주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저층부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대로87 경서빌딩	062-975-6436 062-975-6462
전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063-240-3486 063-240-3398
익산	산재예방지도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78	063-839-0033
군산	산재예방지도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5길 44	063-450-0547
목포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 41번길 8	061-280-0173
여수	산재예방지도과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061-650-0153
제주	산재예방지도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064-728-7141
대전청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34	042-480-6310 042-480-6315
청주	산재예방지도과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청주지방합동청사	043-299-1313
천안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2 신성빌딩	041-560-2812 041-560-2969
충주	산재예방지도과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3-3	043-840-4033
보령	산재예방지도과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42	041-930-6146
서산	산재예방지도팀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남1로 37	041-661-5643

